

입법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가의 자율방역 강화를 유도하고자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높이고 방역 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제고하는 등 보상금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여 가축방역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마련(안 제2조의6 및 별표 1의3)

나.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다.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1)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일반기준 및 과징금의 산정 방법 마련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 신설

3) 과징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마련

라.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조정(안 별표 2)

1) 검사·주사 등 명령 위반 농가에 대한 감액률 상향

2)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 가축전염병 최초신고 및 조기신고 농가에
대한 감액 경감률 상향

3) 감액 경감 기준 대상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 추가

4) 보상금 최소 지급 비율을 상향하되, 구제역 발생농가 중 예방접종 명
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지급 대상에서 제외

마.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고, 가
축방역관 위촉 해제 조항을 마련(안 제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가축방역관을 임명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축방역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가.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또는 축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

진 사람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가축방역관은 위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가축방역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된 경우
2. 「수의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본인이 가축방역관의 위촉 해제를 신청한 경우
4.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의사법」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에 따라 그가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동물병원의 동물진료업이 정지되어 가축방역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방역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6. 가축방역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7. 질병, 장기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축방역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가축방역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

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7조의5(과징금 가산금의 징수)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 카목1)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3)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가목 1)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가이거나 「축산물」을 “농가, 「축산물”로 하며, “농가 또는 「친환경농어업”을 “농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취득한 농가 또는 「친환경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거나 제6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4호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2호카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7	500	750	1,000
타. 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8	500	750	1,000
파. 법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9	500	750	1,000
하. 법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10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더목(중전의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3호의7”을 “제2항제3호의11”로 하고, 같은 호 머목(중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3호의8”을 “제2항제3호의12”로 하며, 같은 호 처목(중전의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3호의9”를 “제2항제3호의13”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부터 후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3항제2호	100	200	3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2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조의7 제1호	등록 취소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7 제2호	등록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5조의7 제3호	등록 취소		
4) 법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조의7 제4호	등록 취소		
5) 법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의7 제5호	등록 취소		
6) 법 제5조의9제2호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5조의7 제6호	영업의 전부 정지 7일	영업의 전부 정지 15일	영업의 전부 정지 1개월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5조의7 제7호	영업의 전부 정지 7일	영업의 전부 정지 15일	영업의 전부 정지 1개월
8) 영업정지 기간 중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한 경우	법 제5조의7 제8호	등록 취소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육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육제한 기간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육제한 기간은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라.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 1)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자, 부화업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업종별 연간 매출액.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2) 그 외 가축의 소유자등: 축종별 사육규모. 이 경우 사육규모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1년간 연평균 사육규모(해당 가축의 1회전 사육을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종축업

1) 종돈업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9,000 미만	2
2	9,000 이상 13,500 미만	6
3	13,500 이상 18,000 미만	9
4	18,000 이상 22,500 미만	11
5	22,500 이상 31,500 미만	15
6	31,500 이상 45,000 미만	21
7	45,000 이상 90,000 미만	37
8	90,000 이상 225,000 미만	87
9	225,000 이상	125

2) 종계업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36,000 미만	15
2	36,000 이상 54,000 미만	38
3	54,000 이상 72,000 미만	53
4	72,000 이상 90,000 미만	68
5	90,000 이상 126,000 미만	91
6	126,000 이상 180,000 미만	129
7	180,000 이상	152

3) 종오리업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34,000 미만	19
2	34,000 이상 51,000 미만	48
3	51,000 이상 68,000 미만	67
4	68,000 이상 85,000 미만	86
5	85,000 이상 119,000 미만	115
6	119,000 이상 170,000 미만	163
7	170,000 이상	192

나. 부화업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500 미만	1
2	1,500 이상 3,000 미만	2
3	3,000 이상 4,500 미만	3
4	4,500 이상 7,500 미만	6
5	7,500 이상 15,000 미만	10
6	15,000 이상 30,000 미만	15
7	30,000 이상 60,000 미만	42
8	60,000 이상	56

다. 정액등처리업(종축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45,000 미만	6
2	45,000 이상 75,000 미만	15
3	75,000 이상 150,000 미만	28
4	150,000 이상 300,000 미만	56
5	300,000 이상	75

라. 가축사육업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가) 한우

등급	사육규모(단위: 마리)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 미만	1
2	10 이상 20 미만	2
3	20 이상 30 미만	4
4	30 이상 40 미만	6
5	40 이상 50 미만	7
6	50 이상 100 미만	12
7	100 이상 200 미만	25
8	200 이상 300 미만	41
9	300 이상 400 미만	58
10	400 이상 500 미만	74
11	500 이상	82

나) 육우

등급	사육규모(단위: 마리)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0 미만	1
2	20 이상 30 미만	2
3	30 이상 40 미만	3
4	40 이상 50 미만	4
5	50 이상 100 미만	5
6	100 이상 200 미만	11
7	200 이상	15

다) 젖소

등급	사육규모(단위: 마리)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 미만	5
2	10 이상 20 미만	16
3	20 이상 30 미만	26
4	30 이상 40 미만	36
5	40 이상 50 미만	47
6	50 이상 100 미만	78
7	100 이상 200 미만	156
8	200 이상	208

2) 돼지 사육업

등급	사육규모(단위: 마리)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500 미만	13
2	500 이상 1,000 미만	38
3	1,000 이상 2,000 미만	77
4	2,000 이상 3,000 미만	128
5	3,000 이상 4,000 미만	179
6	4,000 이상 5,000 미만	230
7	5,000 이상	255

3) 닭 사육업

가) 산란계

등급	사육규모(단위: 마리)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5,000 미만	3
2	5,000 이상 10,000 미만	9
3	10,000 이상 20,000 미만	18
4	20,000 이상 30,000 미만	30
5	30,000 이상 40,000 미만	42
6	40,000 이상 50,000 미만	54
7	50,000 이상 100,000 미만	90
8	100,000 이상 150,000 미만	150
9	150,000 이상 200,000 미만	210
10	200,000 이상	240

나) 육계

등급	사육규모 (단위: 마리)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5,000 미만	1
2	5,000 이상 10,000 미만	2
3	10,000 이상 20,000 미만	5
4	20,000 이상 30,000 미만	8
5	30,000 이상 40,000 미만	11
6	40,000 이상 50,000 미만	14
7	50,000 이상 100,000 미만	23
8	100,000 이상 150,000 미만	38
9	150,000 이상 200,000 미만	53
10	200,000 이상	60

4) 오리 사육업

등급	사육규모 (단위: 마리)	사육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5,000 미만	5
2	5,000 이상 10,000 미만	14
3	10,000 이상 20,000 미만	27
4	20,000 이상 30,000 미만	45
5	30,000 이상	5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생 략)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u>	<u>제2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u>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1.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가축방역관을 임명한다</u> 2.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축방역관을</u>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위축할 수 있다.

가.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
받은 의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가축방역, 축산물 위
생 또는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공무원으
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
진 사람

(3)-----

다만, 제2
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가축방
역관은 위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업무를 담
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한 가축방역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된 경우
2. 「수의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본인이 가축방역관의 위촉해제를 신청한 경우
4.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의사법」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에 따라 그 가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동물병원의 동물진료업이 정지되어 가축방역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방역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6. 가축방역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7. 질병, 장기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축방역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

④ · ⑤ (생략)

<신설>

<신설>

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가축방역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7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신 설>

<신 설>

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7조의5(과징금 가산금의 징수)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고 1] 별표 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 목 및 바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바목부터 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病性) 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차. (생 략) 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u>100분의</u>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1)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 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측평가액의 전액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생 략)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측평가액의 <u>100분의 5</u>에 해당 하는 금액 다. ~ 어. (생 략) 3.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가.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 당하는 자의 경우 1) 1등급: 가측평가액의 <u>100분</u> <u>의 10</u>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가측평가액의 <u>100분</u> <u>의 5</u>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구제역, 럽피스킨병, 고병원 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을 최초로 신고(시·군·구 단위 로 판단하며, 브루셀라병의 경 우에는 발생 빈도 및 검사기 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u>20</u>----- ----- ----- -----. 2) (현행과 같음) 3) ----- ----- -----<u>100분의 10</u> ----- 다. ~ 어.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1등급: 가측평가액의 <u>100분</u> <u>의 15</u>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가측평가액의 <u>100분</u> <u>의 10</u>에 해당하는 금액 나. ----- ----- ----- ----- ----- ----- -----
--	---

사. ~ 아.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가축 평가액의 <u>100분의 20</u>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축 평가액의 <u>100분의 20</u>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5. (생략)	<u>받거나 제6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사. ~ 아. (현행과 같음) 4. ----- ----- -----<u>100분의 30</u>----- ----- -----<u>100분의 30</u>----- -----<u>. 다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5. (현행과 같음)
---	--

[참고 2] 별표 3 개정안 전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서목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300 500	600 750	1,000 1,000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의2	300 100	600 200	1,000 1,0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3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호	경고	10	50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3	500	750	1,000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4	300	600	1,000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5	100	200	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6	100	200	500
카.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7	500	750	1,000
타. 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8	500	750	1,000
파. 법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9	500	750	1,000
하. 법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10	500	750	1,000
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	법 제60조 제1항제1호	2,500	3,500	5,000

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2,500	3,500	5,000
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11	500	750	1,000
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2,500	3,500	5,000
먼.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12	500	750	1,000
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2,500	3,500	5,000
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500	3,500	5,000
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2,500	3,500	5,000
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	법 제60조 제1항제7호	2,500	3,500	5,000

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저.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13	500	750	1,000
커.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3항제2호	100	200	300
터.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0 200	750 400	1,000 1,000
피.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0	750	1,000
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500	750	1,000
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50 300	200 600	1,000 1,000

노.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	200	1,000
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400	1,000
		100	400	800
		500	750	1,000
		500	750	1,000
		500	750	1,000
		500	750	1,000
		500	750	1,000
로.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	법 제60조 제3항제3호	50	200	300
		50	100	200
		100	150	200
		100	150	200

조업자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모.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3호의2	50	200	300
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150	300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0	20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소.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2	500	750	1,000
오.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3	500	750	1,000
조.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4	50	200	1,000
초.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2	100	200	300
코.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3	100	200	300
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4	100	200	300

포.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5	100	200	500
호.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6	100	200	500
구.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7	100	200	500
노.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8	100	200	500
두.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9	100	200	500
루.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5	100	200	300
모.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10	100	500	1,000

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경우		100	200	1,000
분.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11	500	750	1,000
수.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5호	100	200	300
우.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5호	50	100	150
주.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6호	100	200	300
추.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300 70	400 100	500 200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	750	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	300	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	10	50
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7호	100	200	300
투.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8호	100	200	300
포.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8호의2	100	200	300
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9호	100	200	300
크.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0호	50	100	200
드.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1호	30	50	100

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2호	50	100	300
		100	200	300
르.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3호	300	3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19